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386 호

1973.7.12.

시보

차 례

이 영구보존문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정서정위원회

◎ 규 칙		
제 1318 호	서울특별시서정쇄신추진위원회규정	3
◎ 고 시		
제 116 호	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시설결정과 지적승인	5
제 117 호	사료성분등특	5
◎ 공 고		
제 141 호	시유재산대부입찰	6
◎ 사 령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39

규 칙

서울특별시서정쇄신추진위원회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197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18 호

서울특별시서정쇄신
추진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의 서정쇄신 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구 및 출장소에
서정쇄신추진위원회를 두고 그 조
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서울특별시 본청에
서울특별시서정쇄신추진위원회 (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구 및
출장소에 각각 그 구 및 출장소
의 명칭을 붙인 서정쇄신추진위원
회 (이하 "구위원회" 또는 "출장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정쇄신 사례의 종합 검토
조정 및 채택에 관한 사항
2. 서정쇄신 사례 추진사항의 평
가분식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정쇄신에 관하여 시장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기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구성) ①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약간인으
로 구성한다.

②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부시장
이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
원은 각관 및 국장이 된다.

③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
은 각실, 과장이 된다.

④출장소 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장
소장이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
고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제 5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각위원
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위원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
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포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회의의
소집을 가늠할 수 있다.

제 7 조 (보고) 각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기관장에
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사와 서기) ①과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와 서기를 둔다.

②사무위원회의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제 4 제장이 된다

③구위원회의 감사는 총무과 기획
제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의 서
정책신업무담당자가 된다.

④출장소위원회의 감사는 서무과
총무제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과의
서정책신업무담당자가 된다.

제 9 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
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에 구성되어 있는 본청 및 구의
서정책신추진위원회는 이 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고 시

◎ 서울 특별 시 고 시 제 116 호

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시설결정과정지적승인

1. 도시계획전기 공급설비 (변전소) 시설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와제 13 조 및 전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7. .

서울 특별 시 장

가. 도시계획전기 공급설비 (변전소) 시설조서

순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중구을지로 5가 39-1	635	방산 22
2	"	성동구신당동 217-6	435	홍인 154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 특별 시 고 시 제 117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3. 7. 9

서울 특별 시 장

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

등록번호	공 장 명	소재지	대표명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3 - 101	영육농장사료공장	동대문구신대동 528	김영희	배합사료	부외이라후기배합사료 (육성용깨미)	부외후대략 4주
3 - 102	"	"	"	"	(완성용하이)	"
3 - 103	"	"	"	"	(육성용하이)	"
3 - 104	"	"	"	"	큰병아리배합사료 (권지)	부외후대략 13주 - 초산
3 - 105	"	"	"	"	젖소용배합사료(2호)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부터 , 까지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 단 백 질	조 지 방	조 섬 유	조 회 분		
이상 16.0 %	이상 2.5 %	이하 6.0 %	이하 10.0 %	73. 7. 9 73. 7. 8	
"	"	"	"	"	
16.0 %	2.5 %	6.0 %	10.0 %	"	
"	"	"	"	"	
16.0 %	2.5 %	6.0 %	10.0 %	"	
"	"	"	"	"	
12.0 %	2.5 %	7.5 %	10.0 %	"	
"	"	"	"	"	
13.0 %	2.0 %	13.0 %	12.0 %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41 호

시유 재산 대부입찰공고

다음포시재산을 지방재정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일반경쟁 입찰합니다.

- 1. 입찰장소 : 당 시 재무국 관재과
- 2. 입찰등록일시 : 1973. 7. 20 .
12 : 00 까지

- 3. 입찰일시 : 1973. 7. 21.
12 : 00 까지

- 4. 입찰 보증금
입찰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당 금액을 입찰자의 명의로 당 시 시금고 (상업은행) 가 발행한 예치증과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함께 동봉하여 입찰등록 일시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5. 대부계약대금 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5일이내에 시세, 국세납부필증(미과세 증명)을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기한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계약보증을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한다.

6. 재산대부후 평수의 증감의 생길 경우에는 당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한다.

7. 재산목록과 계약조항은 당시 재무국 관재과(75-683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재산의 표시

용산구 한남동산 10-145

임야 : 1,205 평

197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사 령

◎ 1973. 7. 5.

기획정리2과 기한부 한형록
공무원 기한만료로 인하여 그직을 면함.

◎ 1973. 7. 7.

운수 3과 지 방 손용식
기계기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구 지 방 박석규
수도사업소 토목기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3. 7. 10.

곽우철
지방행정주사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이충우
지방서기관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정개발담당관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장